

#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명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30.

발 의 자 : 박명재·경대수·김태흠  
강석호·강길부·김종태  
박인숙·김명연·김정재  
황영철·이학재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·채권·외환·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임.

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한국투자공사가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 한국투자공사는 국가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주식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

규정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로 하여금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2항 신설).

##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전단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.

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동조제2항”을 “같은 조 제3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 방식 등) ①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,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·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3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생략)</p> <p>② 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</p>	<p>제31조(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 방식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제3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<u>같은 조 제3항</u>----- -----</p>

<p>등록·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. 1. ~ 4. (생략) ③ ~ ⑤ (생략)</p>	<p>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